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44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문진석・이건태・이연희

박정현 • 박성준 • 이정문

김문수 · 김윤덕 · 윤호중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종류 중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포함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선유지비,"를 "수선유지비,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관리비·이사비·중개보수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② 관리비등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등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관리비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 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④ 관리비등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비등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해당 주택등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 2. 해당 주택등에 거주하는데 소요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리비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임차료"를 "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차임(借賃)을"을 "차임(借賃) 또는 관리비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을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을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등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 1. -----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것을 말한다.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관리비 · 이사비 · 중개 보수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 의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 (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 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에게 지급한다. ② 관리비등의 지급기준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 리비등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 제10조(신청조사) ① · ② (생략)

<신 설>

하여 정한다.

- ③ 관리비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있다.
- ① 관리비등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신청조사) ① · ② (현행 과 같음)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비등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해당 주택등의 관리비에 관 한 사항
 - 2. 해당 주택등에 거주하는데

 소요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에 관한 사항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 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 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 설></u>

<u><신</u>설>

- 3. (생략)
- ② (생략)
-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생 략)
 -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 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3. 그 밖에 관리비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확인조사)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주
택등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
사비 및 중개보수비에 관한
<u>사항</u>
<u>5.</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 1. (생략)
- 2. 수급자가 지급받은 <u>임차료</u>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으로 <u>차임(借賃)을</u> 연체한 경 우

③ (생략)

-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 산화) ① · ② (생 략)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 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 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현행과 같음) 2 또는 관리비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	¹ 의 전
산화) ① · ② (현행과 ③	
, 	
 1. <u>임차료, 수선유지비 및</u> 비등을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2. <u>임차료 및 수선유지비</u>의 지 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 료
- 3. 4. (생략)
- 5. 그 밖에 <u>임차료 및 수선유지</u> <u>비를</u>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 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자료
- ④ · ⑤ (생 략)

_
2.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
비등
3.・4. (현행과 같음)
5 <u>임차료, 수선유지비</u>
및 관리비등을
④ · ⑤ (현행과 같음)